

# 韓國圖書館發展計劃(草案) ◀2▶

## 〈目 次〉

1. 韓國圖書館發展의 歷史의 背景	4.1 圖書館政策에 關한 國際的 趨勢
2. 韓國圖書館의 現況	4.2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
2.1 公共圖書館	4.3 컴퓨터와 圖書館政策
2.2 大學圖書館	4.4 文獻情報政策의 提議
2.3 學校圖書館	5. 圖書館發展計劃의 基本目的과 計劃目標
2.4 專門圖書館	5.1 基本目的
2.5 圖書館學教育現況	5.2 計劃目標
3. 學術 및 産業情報의 主要性	6. 計劃推進手段의 設定方向
3.1 産業의 成長과 文獻情報	6.1 年次計劃
3.2 學術의 振興과 文獻情報	6.2 法律의 保障
3.3 研究開發(R & D)과 文獻情報	6.3 프로젝트制의 開發
3.4 文獻情報와 圖書館	6.4 財政의 確保
4. 圖書館政策의 必要性和 時代的 要求	

### 5.2.4 標準化

資料의 分擔蒐集은 結果적으로 資料의 共有的 利用을 前提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共有的 利用을 위해서는 우선 情報檢索道具가 標準化되어야 한다. 情報檢索道具가 統一된 形式과 同一한 規格에 따라 作成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62年 國際目錄原則의 聲明(I.C.C.P.)은 자료의 統一된 目錄作成을 위한 국제규모의 회의였으며 도큐멘테이션은 초창기부터 世界的인 統一化된 자료 조직과 검색에 대한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었다. 最近에는 유네스코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유니시스트(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 UNISIST)<sup>17)</sup>나 IFLA(國際圖書館協會聯盟)에서 추진되고 있는 U.B.C. 計劃<sup>18)</sup>이 바로 이와 같은 國際的 規則의 制定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ISBD나 ISSN<sup>19)</sup> 또는 ISO에서 制定되어 나 오고 있는 書誌的 資料의 처리기준은 우리나라에서도 기필코 준수하여야 할 事項인 것이다.<sup>20)</sup>

韓國의 現況은 아직은 이들을 준수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施策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部分的으로 散漫하게나마 이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本 計劃의 第4指針은 書誌的 資料를 標準化하기 위한

細部計劃으로서 目標年度까지 全國의 書誌資料를 하나의 基準으로 統一化하는데 주어진다. 특히 이 計劃은 앞으로 올 機械可讀形式(Machine Readable Form)의 整理方式을 可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준하는 韓國의 基準(Korean Standard)을 制定 施行하도록 하는 데 力點을 둔다.

#### 5.2.4.1 組織의 形成

標準化計劃은 韓國圖書館協會가 主體가 되어 이를 推進한다. 圖協은 韓國의 圖書 및 書誌作成을 위한 標準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일단 標準案이 決定되면 이를 工業振興廳標準局에 등록하여 표준안을 確定시키고 文化公報部는 그 시행주체가 되어 國立中央圖書館으로 하여금 情報資料 納本時 이를 施行 規制하도록 計劃한다. 各組織單位別 機能은 다음과 같이 計劃한다.

17) UNISIST; Synopsis of the feasibility study on a 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 by UNESCO.

18)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long term policy a plan for action, by Dorothy Anderson, ibid, pp.44-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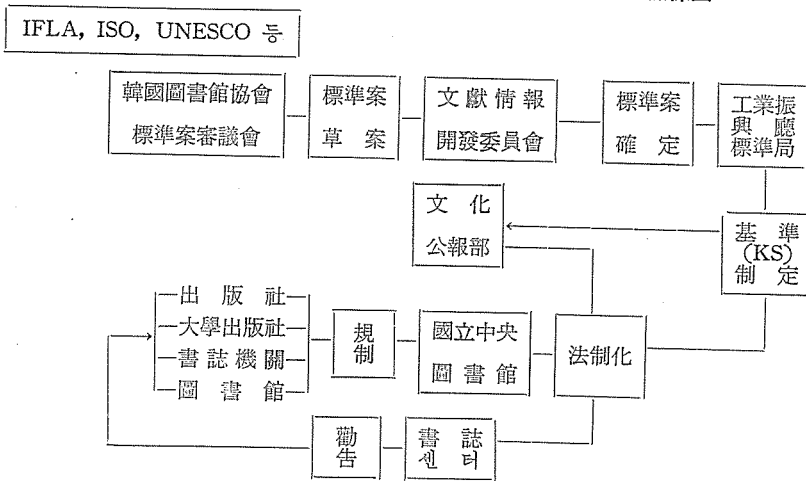
19) 第4.1章, 圖書館政策에 關한 國際的 趨勢 참조.

20) ISO의 現제 韓國 대표기관은 公印진흥청 표준국이다. 문헌정보에 關한 안전은 원칙적으로 도서관 관리부서로 이 關되어야 한다. 各國의 경우 이 원칙은 준수되고 있다.

[도표 5-9] 組織單位別 機能

組織單位	主 機 能	內 譯
韓國圖協：書誌標準案審議會	草案의 制定	한국도서관협회 산하에 書誌標準化審議會를 설치하고 ISO, IFLA, UNESCO 등 국제표준안 제정기구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며 韓國의 書誌標準化案의 制定權限을 갖는다.
國家文獻情報開發委員會	草案의 審議	草案은 文獻情報開發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確定案이 된다.
工業振興廳標準局	韓國의 標準案으로 登錄	提案된 確定案은 工業振興廳標準局에 登記하여 韓國基準(Korean Standard)으로 制定한다.
文化公報部	法 制 化	登記된 基準은 文化公報部에 의하여 法制化된다. 특히 強力히 추진되어야 할 部門은 定期刊行物이며 이는 現在 世界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I.S.D.S(국제연속간행물 메이터 시스템)에 適用하도록 하는 것이다.
國立中央圖書館	規 制	國立中央圖書館은 納本業務를 수행하면서 標準을 遵守하도록 規制한다.
書誌 센터	권 고	표준화 기준을 권고하여 각 書誌機關이 準用하도록 적극적인 奉仕活動을 展開한다.

[도표 5-10] 標準化計劃推進機構의 相關關係圖



5.2.5 人的資源의 確保

文獻情報은 첨단적인 學術의 結晶體로서 이를 運營하고 管理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적인 學術文獻을 分析하고 評價할 수 있는 學問의 背景과 文獻處理技術을 가진 많은 人力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人力을 確保하는 것이 文獻情報管理의 成敗를 가름할 만큼 重要한 것이다.<sup>21)</sup> 더구나 現代의 情報處理技術은 急速하게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知識과 技術을 신속히 導入하기 위해서는 圖書館人의 새로운 教育을 통해서 資質을 向上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圖書館人의 再教育과 有能한 情報分析專門家의 確保가 절실히 要請되며 計劃的인 育成策이 시급히 定立되어야 하는 것이다. 圖書館人의 人力開發은 먼저 司書職制度의 改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다

음으로 再教育에 의한 情報處理方法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5.2.5.1 司書職制

有能한 圖書館人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活動하는 圖書館 및 情報處理業務에서 完전한 獨立性을 부여함으로써<sup>22)</sup> 그들 自身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國家에서 保護하여 주어야 한다.

21) UNISIST using and improving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for developmen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draft), Paris, UNESCO, 1974.

22) R.S. Taylor,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1. New York, Interscience, 1966, pp.15-40 참조.

[도표 5-11] 司書職制의 改善方案

職名	基本資格	責任事項
文獻研究士	1) 碩士學位 이후의學位取得者(박사학위) 및 이에 준하는 학력 2) 석사학위取得 이후 10年 경력자	最終決定權者—圖書館의 최종권한자가 되며 公共圖書館과 大學 및 기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責任者가 된다. 研究官—圖書館의 研究者로서 教育이나 기타 연구집단에 종사할 자격을 갖는다.
文獻研究士 補	1) 學士學位 이후의學位(석사학위) 및 이에 준하는 학력 2) 學士學位取得 후 10年 이상의 경력자	專門職責任—도서관조직의 각 단위별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는 最終責任者가 되기도 한다. 단, 大學圖書館의 최고책임자는 될 수 없다. 研究官—도서관학에 대한 연구자로서 教育이나 기타 연구집단에 연구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
文獻士	1) 學士學位(도서관학이 아니라도 可함. 단, 學士學位 이후에 도서관에 대한 추가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석사학위를 除外한 學士學位 이후의 추가 졸업 이수자	補助職—도서관조직의 각 단위별 책임자가 된다. (단, 어느 경우이던 최종 책임자는 될 수 없다.) 단,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책임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文獻士補	最低 2年制大學 이수자	도서관의 조직부서에서 근무하는 實務者. 경력 여하를 불문하고 부서 책임자나 최종책임자는 될 수 없다.
文獻技士	高校卒業者	도서관조직의 實務者를 보조하는 助手, 경력 여하를 불문하고 조직의 책임자나 부서의 최종 책임자는 될 수 없다.

再教育의 方向은 現代圖書館學이 새로이 發展하고

우리나라의 司書職制<sup>23)</sup>는 1963년에 發効된 圖書館法에 의하여 그 法的인 資格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實際에 있어선 항상 被支配的인 位置에 있는 實情이다. 특히 大學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은 司書의 職位를 完全히 從屬的인 位置에 국한된 地位만 부여하고 있다. 韓國圖書館의 根源的인 發展沮害 요인이 되고 있는 이 被支配의 地位現狀은 하루 速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한 最初의 作業은 現在까지 圖書館法 및 그 시행령에 制定되어 있는 司書職制度를 改善하는 것이다. 現 職制는 大學卒業者 이상의 學歷을 가진 者를 中心으로 하여 規定된 司書와 初級大 및 實務經歷을 中心으로 하여 規定된 準司書의 2種이 있다. 이와 같이 法律上 限界點이 大學卒業者까지로 資格지어진 點은 圖書館의 職制上 上限線을 크게 制限하는 結果를 가져온 것으로서 이를 改定하여 그 上位職制를 設定함이 司書職의 獨立性을 부여하는 捷徑이 된다. 한편 下位職에 대한 種別 역시 보다 彈力性 있는 圖書館 業務에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圖書館法 및 그 施行令의 司書職改善]

1970年 美國의 圖書館協會가 이미 提示한 바 있는 聲明書(Library Education and Manpower ALA Policy Proposal)<sup>24)</sup>은 이미 수년에 걸친 연구끝에 사서직제 설정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의 司書職制를 改善하는데 있어서 큰 암시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本 計劃에서 強力히 추진되어야 할 司書職制度의 改善點을 提示하면 [도표 5-11]과 같다.

5.2.5.2 再教育

圖書館의 文獻情報管理技術은 科學技術分野의 發展 이상으로 發展하고 또한 變貌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새로운 圖書館業務技術을 導入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의 하나이다. 기존의 圖書館技術은 새로이 發展되고 있는 情報處理手段으로 代替되어야 하며 기존의 教育에 依存하고 있는 現場의 圖書館技術은 새로운 次元의 教育에 의하여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 既存 圖書館人을 위한 再教育은 이와같은 새로운 技術의 導入을 위한 捷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改革이 人的인 要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再教育의 問題는 現段階로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새로운 技術에 의한 情報處理技術, 예를 들면 EDPS의 技術은 歷史的으로 보아 아직은 日淺한 것이며 이에 對應하기 위한 우리의 努力은 결코 뒤진 것만은 아니다. 기타의 側面에 있어서도 再教育은 現時期를 지나친다면 世界的인 主流로부터 落後되고 不幸스러운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3) 도서관법, 1963 제정, 제5조 2항 참조.

24) 이병목 역, 「圖書館職 教育과 그 人的 資源」(美國圖書館協會 政策聲明書) 도서관 Vol. 26, No.1 (1971.1) pp.9~14.

變貌하고 있는 分野의 教科目을 주로 履修하게 하고, 그 履修者에 대한 資格은 前述한 研究文獻士補까지 賦與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再教育은 現存하는 圖書館學科 및 文獻情報開發委員會에서 定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이를 施行하게 한다. 이 計劃은 기존 圖書館人으로 하여금 새롭게 대두되는 學問分野를 周知시키는 동시에 情報의 組織網을 形成하고 EDPS化에 의한 組織的인 情報供給體系를 形成하는데 있어서도 絶對的인 것이다. 計劃上 豫想되는 諸科目을 例示하면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2] 履修教科目一覽

科 目	時 間	主 催 者	備 考
情報學原論	50時間	① 圖書館學科가 있는 大學	
情報管理論	30時間		
情報檢索論	30時間	②기타 文獻情報開發委員會에서 定하는 機關	
國際標準化方案의 檢討	20時間		
國際目錄原則의 統一計劃	20時間	③ 講師는 大學 및 圖書館에 勤務하는 學者	
EDPS 概論	20時間		
MARC 概論	20時間		
System Analysis	20時間		
組織學(Seminar)	10時間		
Abstracting and Indexing	30時間		
기 타	10時間		
計	260時間		

이러한 教育에 대한 세부계획은 기술위원회의 연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2.5.3 教育制度

韓國의 圖書館教育制度는 短期教育에서 비롯되어 大學院教育까지 雜多하게 展開되고 있다. 1954年 Peabody 教育使節團에 의하여 비롯된 韓國의 圖書館教育은<sup>25)</sup> 初期의 短期教育制度를 답습하여 現在에도 成均館大學校 司書教育院이 存續되고 있으며 實業教育의 育成方案에 따라 각 專門大學 및 實業學校에 2年制 圖書館學科가 4個處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大學의 圖書館學科가 5個處에 이르고 이들은 각각 大學院課程을 設定하고 있다. 最近에는 4個大學에 병설되고 있는 專門大學에도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教育機關의 多技化가 劃策되고 있다. 즉, 도서관교육은 단기교육에서 중기 및 장기 등 雜多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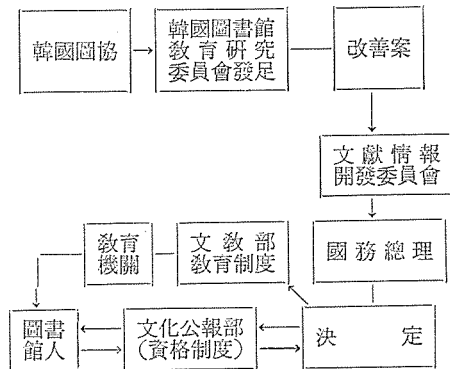
이와같은 多角的인 圖書館教育은 圖書館人의 量的擴大에는 크게 寄與될 수 있겠으나 그들 專門人들간의

秩序를 維持하고 이들의 資質을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는 寄與할 수가 없다. 더구나 學位나 教育의 履修年限이 專門人의 職制上의 資格과 밀접히 연관되어 賦與되고 있는 資格制度에 있어서도 이들과의 조화는 圓滿한 것이 못된다. 教育內容에 있어서도 이러한 現實的인 問題點이 複雜하게 얽혀있는 狀態를 안은채 명확한 境界線이 없이 圖書館教育이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本 計劃에서는 이미 5.2.3.1項에서 밝힌 바와 같이 圖書館人의 資格制度를 5個層으로 區分하고 그 階級 설정을 學歷과 經歷을 참고하여 規定한다고 한 바 있다. 圖書館教育制度는 이러한 資格制度를 參照하여 全面的으로 改善할 需要가 있다. 教育內容 또한 현대적인 概念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특히 急激하게 발전되는 情報科學의 諸理論과 EDPS化에 따른 概念의 導入은 時急한 問題의 하나이다.

圖書館教育의 再檢討는 이러한 側面에서 相當期間의 研究를 거듭하여야 할 것이며 그 施行은 역시 國家에 의하여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再檢討를 위한 첫 段階는 韓國圖書館教育制度 研究委員會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教育制度와 教育內容 등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하는 것이다. 다음 段階는 적어도 2次年度까지 改善案을 完成하고, 文獻情報開發委員會에서 檢討하여 國務總理의 決定을 거쳐서 3次년에 確定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표 5-13] 圖書館教育의 再檢討推進



最小限 本 計劃의 第1次計劃은 5次年度末에는 改善案의 確定施行이 이루어져야 한다.

5.2.6 奉仕機能의 強化

圖書館이 文獻情報를 필요로 하는 人們에게 가장 效果的으로 편리하게 利用되도록 하기 위한 현대에 있어서 도서관은 人類의 文化를 效果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國家나 社會의 公共機關이 關係大衆에게 能動的

25)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협회 30년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8 참조.

으로 奉仕하는 公적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奉仕의인 利用促進策이 講究되어야 하는 것이다.

圖書館의 傳統的인 奉仕機能은 參考機能(Reference), 閱覽機能(Circulation), 對外活動(Extension)機能으로 大分되고 여기에서 각각 細分된 機能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奉仕機能은 現代에 이르러 더욱 細分化되고 그 技術 역시 많은 發展을 가져왔으나 重要한 하나의 現象은 奉仕機能이 變化되어 가고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아직은 一般化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UNISIST의 1971年度 妥當性調查報告書(UNISIT Feasibility Report 1971)에 提示된 文獻情報機關의 多樣化는 이러한 現狀을 端的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이 報告書에는 Information Analysis Center(情報分析센터), Basic Access(基礎書誌機關), Library(圖書館), Data Center(數值資料센터), Clearing House(情報交換所)로 類別되고 있다.<sup>27)</sup> 이 概念은 圖書館이 傳統的으로 展開하여 왔던 그 이상의 새로운 奉仕機能으로서 圖書館機能의 擴張 내지 深化라고 解析될 수 있다.

本 計劃이 指向하는 奉仕機能의 強化는 크게는 圖書館機能의 범주를 UNISIST 報告書에 提示된 多元性에 立脚하고 한편으로는 傳統的인 圖書館機能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接近하는데 力點을 둔다. 圖書館機能은 다음의 5個 범주로 그 機能을 分化하고 奉仕機能을 強化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로 文化的 機能으로서 文化全般에 걸친 保存과 傳授機能이고,

둘째로는 情報分析센터의 機能,

셋째로는 Data Center의 機能,

넷째로 基礎書誌機關의 機能,

끝으로 教育의 機能으로 區分한다.

### 5.2.6.1 文化機能의 強化

一般的으로 모든 圖書館은 文化機關으로서 遂行하여야 할 奉仕機能을 含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公共圖書館 分野에서 강조되어야 할 大學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은 이러한 機能보다는 오히려 情報分析機能과 教育의 機能이 強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은 一般的인 文化的 보급과 그 向上을 目的으로 하며 行政資料의 合理的 活用을 촉구하는 機能을 간직하여야 하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은 地域別이나 文化圈別로 組織化되고 그 組織間의 相互協力을 통하여 全國民에게 均衡된 文化的 惠澤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韓國의 경우 公共圖書館의 組織體系는 行政區域別로 이루어지는 것이 妥當

하다. 이 計劃은 이미 5.2.1項에서 大體的으로 提示한 바 있다. 다음으로 公共圖書館機能은 그 規模에 따라 多樣하고 奉仕對象地域의 特性에 따라 각각 獨自性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公共圖書館의 數의 擴大가 圖書館의 文化的 機能을 強化하는 重要한 要素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文教部는 1967年度에 郡單位 圖書館 設置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計劃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으며 이 計劃으로 設置되었던 圖書館까지 그 運營難으로 閉鎖되는 現狀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圖書館數만의 增加를 위한 計劃은 결코 合理的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本 計劃은 이미 設置되어 있는 108個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正常化하는 것을 그 첫 課題로 삼아 初期計劃年度內에 正常運營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數를 增加시키기 위한 計劃을 立案하도록 한다.

#### ① 公共圖書館組織網의 形成

公共圖書館은 組織網을 통하여 大衆과 社會 요구에 對應할 수 있는 情報源을 構築하여야 한다. 組織網이 形成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도 有機的인 충분한 奉仕機能은 發揮될 수 없다. 公共圖書館은 年齡이나 性別에 關係없이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하고 그들의 多様な 요구에 對應하기 위하여 그 圖書館에 所藏된 情報資源 뿐만 아니라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의하여 충실하게 奉仕해야 하기 때문이다.

組織網形成은 이미 提示된(5.2.1에서)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을 하나의 頂點으로 하여 그 傘下에 地域別 中央圖書館을 連結시켜서 上位圈組織網을 形成하게 한다. 각 道單位로 中央圖書館을 最小限 1個館을 設置하고 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는 각각 1個館의 中央圖書館을 設置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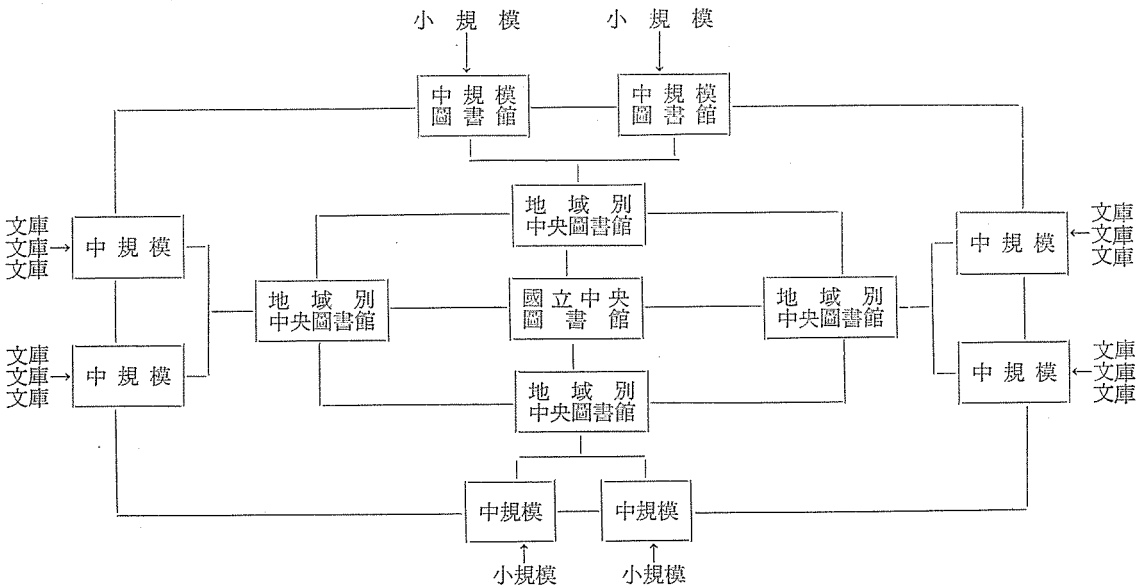
각 地域別 中央圖書館은 該當地域의 公共圖書館을 總括하여 指導育成하며 각각 그 地域組織網의 責任部署가 된다. 또한 地域別 中央圖書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받은 國家豫算中에서 組織化를 위한 諸 프로젝트 基金의 單位別 執行자가 된다. 그리하여 모든 公共圖書館은 다음 項(②)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大·中·小規模의 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각각 부여된 機能을 發揮하는 동시에 地域別 中央圖書館을 통해서 國立中央圖書館과 연결되도록 한다.

組織編成圖는 [도표 5-14]와 같다.

26) De Lannoy, Jean-Pierre, Guide for conversing of school library into media centers, Paris, UNESCO, 1977, pp. 210~250 참조.

27) UNISIST, Synopsis of the feasibility study on a 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 ibid, pp.49-59 참조.

[도표 5-14] 公共圖書館 NETWORK의 形成



[도표 5-15] 圖書館의 遂行機能과 規模

區分	遂行事項 (특히 強調되는 것)	해당기관범주
1. 地域別 中央圖書館	① 協同組織編成 ② 分擔計劃總括 ③ 行政支援(公文書館) ④ 地域別 行政資料蒐集 保存 ⑤ 上位中央機關과의 連 絡	① 各種別 1 個館 ② 서울特別 市와 直轄市 에 각각 1個 館
2. [大規模] 公共圖書館	① 分擔된 分野의 情報 센터 ② 地域社會 特性에 立 脚한 情報센터 ③ 當該地域의 郷土資料 蒐集 ④ 當該地域의 文化活動 支援	職員 80名이 상으로 藏書 5萬卷 이상 의 圖書館
3. [中規模] 公共圖書館	① 一般讀書資料閱覽奉仕 ② 文學·藝術의 분담수 서 및 閱覽 ③ 讀書勸獎(集團活動) ④ 마을文庫運營	職員 30名이 상 藏書 5,000卷 이 상의 圖書館
4. [小規模] 公共圖書館	① 時事資料의 閱覽 ② 文藝分野의 讀書勸獎 ③ 大·中圖書館으로부터 巡回文庫의 設置運營	職員 20名이 하의 小圖書 館 藏書 2,000卷程度

度에는 完成된 모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② 機能의 分化

公共圖書館의 機能은 그 規模의 等級에 따라 이를 大·中·小의 3個 범주로 區分하고 각각 合當한 機能을 부여하여 全體의인 調和와 協同을 劃策하도록 計劃한다. 이 중 地域別 中央圖書館은 大規模圖書館의 機能을 포함하면서 同時에 中央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하도록 한다. 各級 圖書館이 遂行하여야 할 主機能과 그 規模는 [도표 5-15]와 같이 定한다.

公共圖書館 資料의 分擔蒐集計劃은 上記 規模에 따라 각각 特定된 主題와 그 圖書館 利用者의 要求에 알맞는 필요하고 적절한 資料를 分擔 蒐集하며 동시에 當該資料에 대한 情報의 中心體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각 地域別로 蒐集計劃이 立案되어 한 地域內에서는 計劃的이고 網羅的인 奉仕가 可能하도록 한다.

③ 與件의 改善

公共圖書館은 文化的 機能의 核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의 現實은 참혹할 정도로 惡條件 속에 놓여 있다. 우선 가장 큰 問題點은 職制이다. 圖書館을 움직이는 核心은 역시 人間의 힘이며 이 힘의 充實한 뒷받침없이 그 機關의 成長이란 기대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職制는 이러한 人間의 힘을 受容하는 制度라 하겠으며 그 制度上의 모순은 人間의 힘을 無力하게 만드는 가장 큰 要因이 되는 것이다. 現在의 職制上으로는 圖書館專門人이 最高責任者인 館長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豫算도 거의 없거니와 圖書館職員

組織形成은 年次的으로 進行하여 目標年度인 5次年

[도표 5-16] 與件的 改善方案

區分	問題點	改善方向
職制의 未備	公共圖書館은 公務員職種의 하나로서 司書라는 직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직열은 上限線을 三級乙類까지로 局限하고 있어 法定限界線이 下位職級에 局限되어 있다.	圖書館人의 資格은 上下로 5區分된 것을 基本으로 公務員法上의 職級을 調整한다. 단, 文獻研究士는 最上限線인 1級甲類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定員의 確保	職制의 改編과 이에 따른 定員의 確保가 問題이다. 現在에도 職制는 있으나 定員이 確保되지 않는 圖書館이 許多하다.	財源의 確保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所屬廳의 一元化	現 公共圖書館은 教育委員會 소속과 地方自治團體 소속으로 크게 二元化되어 있다. 즉, 教育委員會 傘下(文教部) 65, 地方自治團體 傘下(內務部) 32, 私立 11 등 公共圖書館이 多元化되어 있다.	上位組織의 改編時 이를 一元化한다. 本計劃으로는 文化公報部로 一元化하고 文化館과 더불어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다하도록 한다.
公共圖書館數의 增加	108個 公共圖書館이란 1個圖書館當 奉仕對象數가 30萬名에 이룬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른바 發展途上國인 우리나라의 文化構造上 크게 모순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郡單位圖書館 設置計劃을 推進한다. 단, 運營可能한 後續的 措置가 되는 範圍內에서 이를 꾸준히 進行한다. 또한 文化院을  흡수 同一 機能을 갖는 圖書館으로 編成하여 數를 擴大한다.
財源의 確保	教育委員會 所屬의 경우 國庫로 支援되며 地方自治團體 所屬의 圖書館은 地方稅源에서 支援되고 있는 現財源은 都合 6.3億 원에 不過하다. 1個 圖書館의 年間豫算은 不過 5.8 百萬 원 線이다.	

定員도 갖출 수가 없다.<sup>28)</sup>

이러한 根本的인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年次的이며 積진적인 改善作業을 전개하도록 計劃하여야 한다.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을 列擧하면 [도표 5-16]과 같다.

### 5.2.6.2 情報分析센터 機能의 強化

情報分析센터의 主要한 機能은 專門主題分野에 대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情報分析和 評價 그리고 該當主題分野의 現象을 調查報告하는 데 있다. 이는 現代情報理論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前進되고 있는 바, 機械的 處理方法에 의한 情報分析和 評價를 위주로 하는 情報分析센터의 主機能은 傳統的인 文獻處理方法과는 다른 새로운 側面을 提示한 것으로서 概念上으로는 現代化된 圖書館機能이라고 解析될 수 있다.

이러한 機能이 積極的으로 展開되어야 할 分野는 먼저 大學圖書館分野를 들 수 있다. 大學圖書館은 學術振興의 原產地로서 細分化된 專門分野의 發展尺度를 가름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大學에 소속되어 있는 圖書館은 자체의 研究機能을 開發하며 또 한편 직접적인 學術振興의 奉仕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情報分析센터 機能을 開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大學圖書館은 자기 專門分野를 가려 그에 해당되는 情報分析센터로 發展시켜야 한다. 이 計劃은 專門分野에 대하여 合理的으로 分擔되어야 한다. 그리고 中央 File 制度에 의한 Library Center의 構成을 그 理想의 方案으로 採擇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第1次 5個年計劃의 目標은 우선 初步的 段階로서 專門分野別 合理的 分擔과 文獻센터를 構成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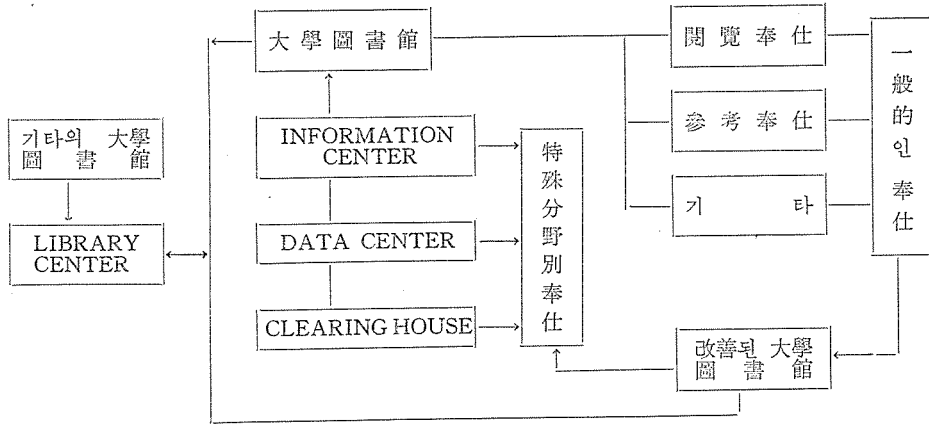
또한 情報分析센터의 機能은 專門圖書館에서 積極的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專門圖書館의 機能도 終局的으로는 國家全體의 水準에서 分化되고 統合되는 有機的인 奉仕體制를 構築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作業은 計劃에 의하여 設立될 國立科學圖書館에 의하여 調整되어야 하며 合理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 事項에 대한 基礎的인 計劃은 (나)項에서 다루기로 한다.

#### (가) 大學圖書館의 機能強化

大學圖書館은 傳統的인 參考奉仕機能에 의하여 學術의 研究 및 教育에 對應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機能은 一般的이며 普遍的인 요구에는 對應할 수 있으나 細分化된 專門分野의 요구에는 전혀 應할 수 없다. 더구나 韓國의 경우 大學圖書館이 當面하고 있는 諸般與

28) 공무원임용령, 제3조1항 참조. 또한 동법의 직제표 참조. 사서직은 행정직급 속에 포함되어 상한선이 3級乙(사서관)까지로 한정되고 있다.

[도표 5-17] 大學圖書館의 機能強化



件에 비추어 參考奉仕의 概念은 原來의 의미대로 展開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大學圖書館의 奉仕體系를 多元化하고 專門化해야 한다. 多元化의 첫 段階은 大學圖書館에 情報分析센터라는 하나의 機構를 부설하여 大學圖書館에 포함되어 있는 情報源의 어느 한 部門의 効用을 極大화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本 計劃은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多元化하기 위한 첫 대상을 情報分析센터의 機能(初期에는)을 獨立的으로 附設하여 나아가도록 하고, 둘째로 數值資料센터도 同一한 方法으로 병설하여 나아가며, 셋째로는 Clearing House를 同一한 方法으로 展開하여 가도록 한다. 이 奉仕體制는 特定 分野別 奉仕(Specific Area Service)를 可能하게 할 수 있게 되며 2段階로서 Library Center<sup>29)</sup>의 設置可能性을 造成할 수 있게 된다.

第1次年度부터 3次까지는 특정한 大學圖書館으로 하여금 實驗의으로 이러한 機能의 專門化計劃을 實施하도록 하며 4次年度부터 5次年度에는 이 計劃을 全面的으로 實施하도록 計劃한다. 第2次 5個年 計劃에는 Library Center를 設置하여 中央 File을 構成하고 이들을 통한 統合計劃을 樹立하도록 한다.

(나) 大學圖書館 機能 現代化

傳統의인 圖書館奉仕方法은 參考業務였다. 이 業務는 總括的이며 一般的이어서 急激히 增大하는 學術情報의 生産과 그 効用에 對應하기에는 力不足인 方法이다. 더구나 迅速성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問題點이 있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는 길은 大學圖書館도 汎用성을 유지하면서 專門的인 奉仕體系를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가)項에서 淸명한 바와 같이 大學圖書館에 附設된 Data Center나 Clearing House와 같은 組織體로 發展시키거나 또는 한 그 機能만을 부여하던가 하는 方法이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다) 協同組織의 形成

大學圖書館의 協同組織도 두가지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綜合目錄의 編成, 相互 대차제도의 發展, 資料交換의 協定 등 基本的인 協力體制를 形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 大學圖書館의 專門分野別 情報센터의 機能을 總括하는 協力體制를 形成하는 것이다. 이 後者의 體制는 終局的으로는 書誌의 自動化에 의존하는 大量情報處理 手段에 의하여 組織될 Library Center (예 : Ohio College Library Center)를 形成하게 된다. 本 計劃은 우선 각 大學圖書館이 專門主題別 情報센터로 組織運營토록 유도하고 同時에 상호대차제도 및 綜合目錄의 編纂 등을 支援 한다. 그 첫 段階로는 Library Center의 編成을 積極 支援한다. 그리하여 大學圖書館을 主題別로 專門化된 奉仕體系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적으로 컴퓨터의 活用을 基本으로 하게 된다. 이에 所要되는 財源은 國庫에 의하여 補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 與件의 改善

大學圖書館의 與件은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에 비하면 그래도 樂觀的인 狀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問題는 大學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의 專門性和 資質 및 地位問題이다.

大學圖書館에서는 그 大學의 敎育과 研究目的에 따른 모든 分野의 專門的인 學術文獻을 分析하고 整理하

29) Library Center의 설치 가능성은 Ohio College Library Centre(OCLS)와 같은 기관의 운영과 실천을 한국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도모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세워본 것이다. OCLS는 大學圖書館들이 中心이 되어 컴퓨터에 의한 中央處理시스템을 완성시킨 세계적인 표본으로 알려져 있다. Kilgour, F.G. and others. The shared cataloging system of the Ohio College Library Center.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5(3), September, 1972, pp.157-183. 참조.



여 學生 및 教授의 學術活動에 效果의으로 奉仕하는 機構로서 여기에 奉仕하는 專門的인 職員은 大學教授와 마찬가지로 각각 專門的인 學問背景을 가진 碩士學位 이상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하며 學士學位所持者라 하더라도 상당한 研究經歷이나 專門圖書館에서의 勤務經歷이 있는 者라야 한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에 종사하는 專門職은 5.2.5.1項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文獻士 및 文獻研究士로 補해야 하며 또한 그들 중에서 最高責任者인 館長에 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他分野의 教授가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改善해야만 한다.

둘째로 大學의 圖書館豫算은 어느 경우이던 完全히 獨立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現在는 大學當局의 지나친 干여로 圖書館의 豫算 執行權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豫算조차 確定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순은 國家에서 強力한 行政力을 發揮하여 善導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本計劃은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對策을 樹立하고 각 委員會 또는 執行部署에서 적절한 對策을 세우도록 計劃한다.

### 5.2.6.3 Data Center 機能의 強化

科學的인 數值資料의 集成과 頒布를 위하여 設置되는 Data Center는 國際的으로 CODATA<sup>30)</sup>에 의하여 育成되었던 各國의 資料센터들로부터 그 必要性이 절감되고 있다. 韓國에는 이 分野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고 그 活用性이 外國과 같이 절실하게 要請되지 않으며, 따라서 數值資料센터도 전혀 設置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將來에는 모든 科學的 研究에 있어서는 數值資料가 科學情報의 기초자료로서 活用될 것이므로 그 要求度가 증대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비한 諸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UNISIST 3.22.10 참조)

本計劃은 Data Center의 設置計劃을 強力하게 推進함으로써 장래의 요구에 對備하여 年次別로 設置하고자 한다. Data Center는 이미 設置되어 있는 圖書館을 Data Center로 轉換하여 나아간다. 主題分野는 物理學과 化學의 各 分野를 包括하여 다루도록 한다.

먼저 示範 Data Center는 國庫補助로서 設置한다. 可能한 限 既存의 大學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 또는 公共圖書館이 이 示範 Data Center의 主對象機關이 되도록 한다. 示範 Data Center를 통하여 그 機能의 分析과 効用을 實驗하여 점진적으로 發展시켜 擴大되도록 한다. 發展計劃의 年次別進行은 年次計劃에서 細分된다.

### 5.2.6.4 基礎的 情報分析業務의 支援

각 大學 및 研究所, 學會 및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個別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情報分析業務는<sup>31)</sup> 圖書館을 중심으로 한 國家文獻情報시스템의 重要한 한 部分으로 인정하고 이 機能을 育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亞細亞問題研究所를 비롯하여 英語英文學會 등에서 중요한 索引 및 抄錄을 作成한 바 있고 그 効用 역시 크게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作業은 所屬되어 있는 學者가 발표한 문헌의 情報蒐集을 타의 어느 機關보다 能率的으로 施行할 수 있고 關係分野의 情報分析과 活用の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索引抄錄作業의 施行機關으로는 適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政府는 이들의 作業을 支援하여 文獻情報制度의 一環으로 育成할 필요가 있다. 이를 效果의으로 遂行시키기 위하여서는 書誌統整業務의 支援金을 支給하지 않으면 안되며, 同時에 그들이 作成한 書誌가 他의 情報와도 統合될 수 있도록 標準化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2)</sup> 이에 대한 年次計劃은 細分하여 그 育成方向을 설정한다.

### 5.2.6.5 教育機能의 強化

특히 教育的 機能이 強化되어야 할 分野는 역시 學校圖書館이다. 學校圖書館은 教育的 核心이기 때문이다. 韓國의 學校圖書館은 그 數에 있어서는 무려 3,954(1975. 國立統計)個館에 達하고 있으나 1個館 소장도서의 平均値는 불과 400冊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司書教師는 1,611名으로서 圖書館數의 半도 미흡하며, 利用對象者는 1個館 平均 900名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現實은 學校圖書館의 機能이 얼마나 弱體인가를 논정하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教育是 國家의 發展에 밀접하게 寄與하며 圖書館은 教育에 實質的으로 參與함으로써 文化의 發展에 寄與

30) ICSU(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 산하에 조직된 기관으로서 數值資料(Compendia of Numerical Data)를 수집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공급시켜주므로써 자연과학 계열에서 必要로 하는 수치(예컨대 지구의 추정년환, 지구와 달과의 인력계수 등)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공식명칭은 ICSU-Committee on Data로서 약칭으로 CODATA로 불리우고 있다.

31) UNISIST의 계획에는 이를 基礎的 情報分析業務(Basic access services)의 重要性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하는 서지적 업무보다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UNISIST, Synopsis of the feasibility study on 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 ibid, p.50.

32) 특히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한 정보를 이루는 각 단위의 표준화는 절대적이며 가능하면 구형식(부호나 숫자 기호 등)도 표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므로 이 分野의 改革과 育成은 時急한 當面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教育機能의 強化를 위한 計劃은 다음과 같은 諸 側面에서 立案되어야 한다. 첫째는 學校圖書館을 複合의 人 資料센터로 育成하기 위한 努力이다. 원래 學校圖書館은 資料센터의 機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現在 韓國의 文教政策이 이를 視聽覺資料室과 圖書館으로 分割運營하도록 조치함으로써 圖書館의 機能이 劣化되었다. 學校圖書館은 모든 教育의 情報資料의 종합적 管理 機能을 發揮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司書教師의 再教育이다. 司書教師는 最小限 視聽覺資料의 製作 및 利用指導를 할 수 있는 段階까지 이르도록 철저한 再教育이 요구된다.

세째로는 각 道敎委會에서는 圖書館을 통한 教育方針도 樹立하여 주어야 한다. 教育의 體質의 改善은 「칠판의 벽」을 타파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圖書館에 소장된 教育資料의 効果의 利用을 통하여 實際的이며 經驗的인 教育이 切實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道敎委會에서는 (가) 圖書館專擔獎學士를 道敎委會內에 配置하여 學校圖書館行政을 施行하며, (나) 學校圖書館運營指針 및 圖書館教育課程 實施要綱 등을 忠實히 제정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한편 上記의 諸 施策을 강구하기 위하여서는 學校圖書館이 當面하고 있는 諸 與件의 改善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 1校 1圖書館 設置의 推進, (나) 司書教師 T.O.의 確保, (다)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의 制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學校圖書館行政의 中央機構는 文教部 傘下에 組織編成될 教育圖書館이 되며, 그 예하에 각 市道教育委員會를 통하여 圖書館政策을 施行하도록 體系를 確立함이 時急한 課題라 하겠다. (年次計劃의 內譯은 별도 章에서 細分된다)

### 5.2.7 書誌自動化 計劃

EDPS에 의한 自動的인 정보의 검색방법은 海外에서는 이제 普遍化되어 있다. 美國議會圖書館의 MARC는 自動化된 國家書誌記錄으로서 가장 靚目한 資料이며 各國의 大圖書館이나 情報分析機關에서 施行하고 있는 主題別 컴퓨터 데이프는 限定된 主題分野를 完全하게 分析 評價하고 報告되는 시스템으로 發展되어 있다. 이와같은 自動化計劃은 이제 國際的인 規模로 발전되어 UNISIST 計劃에 의한 ISDS(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가 施行되고 있고 UNESCO에서는 ISORID가 計劃대로 實踐되고 있으며 IFLA에서는 UNI-MARC가 推進되고 있다.

韓國에서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나 KIST에서 一部資料에 대한 自動化計劃이 推進되고 있으나 國家書

誌라는 次元에서 展開되어야 할 自動化計劃은 아직 計劃된 것조차 없다. 더구나 國際的으로 共同入力하여야 하는 國家單位別 情報分析作業은 이에 대한 要請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時急히 打開되어야 하는 當面課題라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이 現狀은 國際的인 聯關關係에 따라 時急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本 計劃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重點的인 施策을 講究한다.

따라서 本 計劃의 첫째 目標은 韓國의 國家書目的 自動化計劃을 完成할 것이다. 우선 單行本에 대한 年度別 書目的 自動化計劃을 完수하고 連續刊行物에 대한 自動化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目標은 각 主題別 自動化計劃의 推進이다. 이를 위해서는 大規模의 情報를 處理하는 컴퓨터를 基礎로 한 産業技術分野, 醫學分野, 農林分野, 教育分野의 情報綜合處理시스템의 形成이 第1次計劃으로 推進되어야 하겠다.

#### 5.2.7.1 KNB-MARC 計劃

韓國의 國家書誌는 納本되는 全圖書에 대한 目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L.C에서 시작하고 있는 MARC는 이미 BNB-MARC 및 IFLA의 UNI-MARC FORMAT이 發表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實施하고 있다. 日本에서도 3年來 이에 대한 철저한 「시뮤레이션」을 하고 있다.

따라서 本 計劃은 韓國의 書誌自動化中 먼저 國家書誌에 대한 計劃을 強力히 推進할 것을 그 目標로 삼는다. 初期年度의 研究課程을 거쳐 5次年度에는 KNB-MARC의 實現을 劃策하도록 한다. 이 計劃의 主權은 國立圖書館이며 機械의 導入은 國庫에 의하여 이룩되도록 한다.

#### 5.2.7.2 連續刊行物의 自動化計劃

ISDS에 대한 對策은 한 나라의 文化度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다 種極的인 姿勢로 임하여야 한다. 이 制度(ISDS: 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는 韓國의 定期刊行物의 統整을 위하여서도 緊要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積極的인 計劃을 立案하고 強力히 推進하여야 한다.

이 計劃은 KNB-MARC와 긴밀한 聯關下에 施行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따라서 目標年度인 第5次年度에는 MARC를 배포하고 동시에 ISDS File을 編成完了할 것을 目標로 한다.

#### 5.2.7.3 각 主題別 自動化計劃

먼저 大學圖書館에서 展開하는 Information Analysis

Center 의 File은 原則的으로 自動化를 基本으로 하여 編成한다. 따라서 國立教育圖書館은 ERIC의 Magnetic Tape와 같은 Format으로 連結되는 教育關係索引을 發展시키고 國立醫學圖書館은 MEDLARS와 連結되는 Format으로 編成된 醫學索引 등을 發展시킨다. 産業技術分野 역시 國際的으로 常用될 수 있는 Format으로 開發되어야 한다.

本 計劃은 이러한 各 分野에 걸친 自動化計劃을 積極的으로 支援하도록 推進한다.

### 6. 計劃推進手段의 設定方向

前章에 提示된 計劃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具體的으로 推進시킬 수 있는 政策手段을 俱現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課題가 된다.

우선 政策手段의 第一次의인 方法은 年次的인 발전을 劃策하는 것이다. 年次期間은 第1次計劃을 5個年으로 하고 이 期間에 本 計劃에서 提示하는 目標를 達成한다.

둘째 手段은 法律的 保障을 劃策함으로써 行政手段

의 基本的 與件을 達成하는 것이다. 法의 改正 및 制定方向은 本 計劃에 提示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手段이다.

세째로는 財政的 對策의 樹立으로서 國策으로 設定된 國家文獻情報制度의 財政的 基盤을 구축하여야 한다.

네째로 計劃性 있는 各種 프로젝트의 展開를 통한 計劃의 推進이다. 이 프로젝트는 各 國家計劃으로 推進되어 年度別로 評價되고 再計劃되어 推進되는 一種의 進흥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各種 手段의 細部 事項을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 6.1 年次計劃

本 計劃은 이미 第2章의 計劃目標(Program Object)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최종적 目的에 도달되기 위한 中間 目標의 設定을 의미한다.

이 中間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우선 第1次 5個年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年次的이며 段階的으로 이룩하도록 政策手段을 강구한다.

6.1.1 年次別 主要目標

年度	項目	政 策 項 目	研 究 項 目	主 管
1 次 年 度		國家文獻情報制度의 樹立 文獻情報開發委員會의  구성 圖書館法의 改定 關係法의 制定 計劃의 採擇 決定	各種 研究課題의 着手 • 國立圖書館設置方案研究 • National Network 方案 研究 • 기 타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發展計劃推進委員會
2 次 年 度		國立圖書館의 設置 全國組織網의  형성 財政豫算의 確保	財政增加策의 研究 標準化方案의 研究 教育方案의 檢討 司書職制의 研究	文獻情報開發委員會 韓國圖書館協會
3 次 年 度		標準化의 實施 各 機能의 分化 書誌 Center의 構成 • 計劃의 分析 • 資格制 • 省力化의 推進 • 教育制度의  개선	自動化方案의 研究 公文書館의 運營方案研究 圖書館運營管理의 研究	文獻情報開發委 文化公報部 韓國圖書館協會
4 次 年 度		自動化豫備施行 計劃의 分析	第2次5個年計劃의 研究	上 同
5 次 年 度		計劃의 完全한 實施 全項目의 實施 圖書館財源의 法制化 計劃의 評價分析	第2次5個年計劃의 確定	上 同

6.1.2 年次別 計劃目標

區 分	計 劃 內 容(目標)	1次 年 度	2次 年 度	3次 年 度	4次 年 度	5次 年 度
公共圖書館	1. 組織網의 形成 1) 地域別 中央圖書館의 決定 2) 組織網의 形成 3) 諸事業의 實施  2. 機能의 分化 1) 大·中·小 圖書館의 발주 決定 2) 大·中·小 圖書館의 效率的 體系樹立  3. 與件의 改善 1) 職制 2) 定員의 確保 3) 所屬廳의 一元化 4) 圖書館數의 增加 5) 財政源의 確保 6) 資料의 擴充	1. 地域組織決定 1) 中央圖書館의 指定 2) 中小規模圖書館의 提案 方案 檢討  大·中·小 規模 圖書館의 決定 · 발주의 決定 · 機能의 決定  展開方法의 研究	事業의 檢討 · 綜合目錄決定 · 相互貸借制決定 · 資料支援對象決定  機能의 分化 目標 決定 · 行政資料센터 · 地域社會別, 主題別 分析機能 · Fiction Lending 文庫  資料의 分擔蒐集	事業의 實施 1次 年度 · 綜合目錄 刊行 · 相互貸借實施 · 資料支援實施  事業展開  項目指定 · 大圖書館別指定 主題別, 形態別 · 小·中圖書館別 指定 文學, 藝術 및 形式別	事業의 實施 2次 年度 · 綜合目錄 刊行 · 相互貸借實施 · 資料支援實施  事業의 實施  財源의 確保 繼續사업의 推進	事業의 實施 3次 年度 · 綜合目錄 刊行 · 相互貸借實施 · 資料支援實施 · 事業의 分析評價  事業의 評價  事業의 分析評價
大學圖書館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大學圖書館機能의 改善方案研究 情報分析機能의 擴大  協同組織에 관한 研究 大學別 主題 分擔 및 國家水準의 資料分擔計劃 完成 司書職의 改善, 豫算의 增額 (學生圖書館) 教育의 要求度 增大 促求 情報分析機能의 擴大 研究 分擔計劃의 作成 Data Center의 機能 研究	研究開發과의 유대성 研究 特定情報에서의 (抄錄索引의 展開) 主題別 資料의 分化  基礎的인 情報分析 機關의 育成 綜合目錄의 編成分擔 研究司書·專門司書의 設定 豫算增額	運營의 改善實施 特定情報 Center의 運營(實驗大學 圖書館) 分化된 資料의 蒐集 Data Center의 병설  第1次 支援金의 교부 第1次 綜合目錄의 編成(프로젝트 支援) 法의 施行(評價조치) 豫算增額 (學生부담) 경과 分析報告	運營의 改善實施 特定情報 Center의 運營 實驗大學圖書館의 增加에서 Data Center의 增加에 由  第2次 年度 支援金의 교부 第2次 年度 綜合目錄 作成 第2次 年度 綜合目錄 作成 第3次 豫算增額	運營改善評價 情報 Center 評價, 實驗大學과의 전문적 適用 分擔 蒐集計劃 評價  成果 分析 綜合目錄 누적 刊行  綜合目錄 누적 刊行 豫算增額  경과 報告
特殊圖書館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1. 機能의 現代化 2. 協同組織의 編成 3. 與件의 改善
教育圖書館	1. 複合資料센터 圖書館의 機能 評價 2. 國立教育圖書館 中央體制 研究 3. 司書教師의 再養成	複合資料센터의 機能 研究 國立教育圖書館 中央體制의 研究	複合資料센터 機能의 定立 國立教育圖書館의 設立 司書教師 再教育	中央制度의 施行 司書教師 再教育 圖書館장학사배치	中央制度의 確立 司書教師 再教育 圖書館장학사배치	複合資料센터 設立 中央制度의 評價 分析 司書教師 再教育 圖書館장학사배치

區 分	計 劃 內 容(目標)	1次 年 度	2次 年 度	3次 年 度	4次 年 度	5次 年 度
Data Center	4. 圖書館장학사의 배치 5. 學校圖書館運營指針 및 圖書館敎科課程 設定 6. 與件의 改善 一校一圖書館 設置計劃 司書 T.O.의 確保. 學校圖書館 施設 基準	기존計劃의 推進 기존計劃의 推進 (再評價研究결행) 一校一圖書館設置 計劃 作成	運營指針 研究 敎科課程設置 計劃 施行 司書敎師 T.O. 施設基準作成下達	運營指針 再下達 未設置 校의 調査 T.O.確保	T.O.確保	運營指針施行 評價 一校一圖書館設置 計劃完了 T.O.確保 施設基準施行評價
	1. 圖書館附設 Data Center 2. 研究所附設 Data Center	Data Center의 設置 方案研究	Data Center 設置 計劃立案	示範 Data Center 設置	示範 Data Center 評價 및 擴張計劃	Data Center 部門 擴張設置
基礎的 情報 分析機關	1. 各 學界 및 研究所의 索引·抄錄 業務 完成 2. 書誌 登錄業務의 實施	基礎調査 (大學圖 書館의 索引·抄 錄 業務 등의 調 査병설)	支援金의 確保 登錄業務의 展開	支援事業의 選定 (支援基金의 支給 10個處)	支援事業의 展開 (支援基金 20個處 確保)	支援事業의 評價 (支援基金 30個處 確定)
公文書館	1. 公文書館 機能의 強化	機能의 許容	公文書館의 運營 方案을 圖書館法 上에 立案			
自動 化	1. 國家書目的 自動 化 完 成 2. 連續刊行物의 自動 化 完成 3. 主要主題索引의 自動 化 · 産業技術 · 農林業 分野 · 醫學分野(國立醫學圖書館) · 教育分野(國立教育圖書館)	自動 化 研究 施行 (MARC와의 연대 關係研究) 自動 化 研究 施行 (ISDS와의 연대 關係研究) 主要 主題의 決定 및 中央機構의 設 定 研究 MEDLARS의 研 究 ERIC에 대한 研究	方向設定 機械의 導入 方向設定 機械의 導入 分擔機關別 自動 化 計劃 樹立 MEDLARS TAP E外 FORMAT에 의한 入出力實驗 ERIC FOMAT 에 의한 入力	豫備施行 豫備施行 豫備施行 機械導入	豫備施行 및 訂正 豫備施行 및 訂正 訂正 實 施 再實驗	國家書目的 完全 自動 化 連續刊行物의 自 動 化 完成 主題別 自動 化 實 施 評價分析 實 施

6.2. 法律의 保障

政策俱現手段의 가장 重要한 方法은 法律에 의한 規制에 그 推進力을 두는 것이다. 法은 國家의 圖書館政策을 俱現하는 하나의 原動力이며 行政의 基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行法인 圖書館法(1963. 制定) 및 그 施行令은 本 計劃의 樹立目的과 全的으로 符合되도록 개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圖書館法에서 改正되어야 할 重要部分은 아래와 같다.

6.2.1 法改正의 主要事項

區 分	骨 子	方 向
國家制度	1. 政府의 文獻情報開發委員會 設置에 관한 條項 2. 政策機關設定에 대한 條項	

區 分	骨 子	方 向
全國組織	3. 補助機關에 대한 條項	
	1. 國立圖書館設置에 관한 條項	
	2. 國立圖書館所屬에 관한 條項	
	3. 公共圖書館 組織網 形成	
	4. 大學圖書館 組織網 形成	
人的資源	5. 公文書館 組織網 形成	
	1. 司書職制의 改善	
	2. 司書養成制度의 改善	
標準化	3. 司書研修院指定에 관한 事項	
	1. 標準案 制定에 관한 事項	
納 本	2. 標準化 施行에 관한 事項	
	1. 納本強化에 관한 事項	
運營指針	2. 納本과 出版登錄에 관한 事項	
	1. 館種別運營指針에 관한 細則	
施設基準	2. 館種別施設基準에 관한 細則	
	1. 館種別 圖書館 政策 施行	
財 政		

細則으로 定한다. 各 部處의

區 分	骨 子	方 向
書誌作成 機關	1. 財政源에 관한 事項 2. 各 프로젝트 개발기금 支援에 관한 事項 1. 書誌作成機關의 支援 및 登錄에 관한 事項 2. 國家書誌作成에 관한 事項 3. 定刊物登錄에 관한 事項 4. 標準化에 관한 事項	所屬을 決定한다.

6.3 프로젝트제의 開發

法에 따라 施行되는 計劃 目標의 접근은 管理機構가 主體가 되어 行政力을 作用시킴으로써 도달되는 것인 만큼 圖書館育成的 自意的 努力보다도 強制的 成長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國家的인 次元에서 推進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法律을 制定하고 이 法律에 따라서 行政的으로 推進하게 된다.

그러나 國家的인 次元에서 어떤 主要한 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그 法律에 따른 行政力으로서만 이루어

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立法精神에 따른 關係分野의 自發的인 努力이 필요하다. 따라서 計劃을 推進하는데 있어서의 動機 부여와 財政基礎를 提供하여 圖書館界의 自發的 努力을 振作시키는 事業을 展開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本 計劃의 推進方法의 하나는 프로젝트 制를 導入하여 政府와 圖書館專門人이 合同하여 財政的인 면에 있어서나 人力養成의 면에서 共同努力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이 計劃은 특히 政府支援 資金과 특히 私立大學圖書館과의 協同計劃이 主眼이 되며, 地方行政廳과의 共同計劃 역시 各種 프로젝트를 開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政府의 圖書館 振興資金은 주로 各 國立圖書館과 圖書館協會 및 國立大學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을 통하여 支給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私立大學圖書館이나 기타 적절한 機關을 통하여 支給되도록 한다. 各 支援金을 필요로 하는 計劃들은 年次別 主要計劃中에서 選定되어야 한다.

6.3.1 프로젝트內譯

選定된 計劃項目을 年次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區分	프 로 제 크 트 명	內 容	關 係 部 門
研究 計劃	1. 公共圖書館 全國組織網形成 研究	公共圖書館의 組織化를 위한 機能分擔計劃의 成案	國立中央圖書館 圖書館協會 기타 專門家
	2. 大學圖書館機能 改善方案의 研究	情報處理機能의 增大 및 研究 開發의 促進支援策의 研究	大學圖書館 및 圖協
	3. 基礎的 情報分析機關의 書誌作成實態調査	각종 書誌作成機關의 調査와 改善方案의 研究	圖協 또는 關係機關
	4. 國立圖書館 設置에 관한 研究	全國規模의 國立圖書館 設置 研究	圖協 또는 關係者
	5. 複合資料센터 (multi-media library)로서의 學校圖書館 育成方案	學校圖書館의 機能擴大를 위한 研究	學校圖書館專攻者 및 國立教育圖書館
	6. 公文書館設置에 관한 研究	특히 地方公文書館의 設置 推進計劃 研究	公文書館
	7. 書誌記述에 관한 國際基準의 導入方案研究	國際基準에 따른 標準化方案 研究	圖協
	8. 自動化方案 研究	MARC Tape에 관한 研究 ISDS와 韓國의 適用性 研究	
事業 計劃	9. 綜合目錄 編成	公共, 大學, 特殊圖書館別 綜合目錄 編纂計劃을 推進(支援金 교부)	· 公共의 中央圖書館 · 國立大學의 中央圖書館 · 중심의 綜合目錄編成機關 · 기타
	10. CIP 計劃 서지센터설치	出版物의 目錄게재計劃	出協 및 圖協

區分	프로젝트名	內 容	關 係 部 門
	11. 全國的인 資料分擔 蒐集計劃 · 主題別 分擔 · 國家對象別 分擔	· 資料의 分擔蒐集計劃 및 相互利用方案의 確定 · 主題別 資料의 점검 후 결실 자료의 完備	
	12. 標準化 審議機構運營	標準化 方案作成을 위한 심의기구 運營	
	13. Data Center 設置計劃支援		
	14. 學界 및 研究所의 Basic Access Service지원 프로젝트	各 學會誌 및 研究實績의 정리	
	15. 國立圖書館設置의 研究	農林·醫學·産業科學·國立中央·國會圖書館의 機能分化的 研究	
	16. 主要資料分擔蒐集事業		

#### 6.4 財政의 確保

本計劃을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財政을 確保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는 것이 先決條件이다.

앞서 열거한 各種 프로젝트나 年次計劃을 위시하여 모든 計劃目標들은 財政의 支援이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財政確保 與否가 바로 計劃成就의 成敗를 가름하는 것이기도 하다.

財政의 確保를 위한 最大의 源泉은 역시 國家에 의하여 支援되는 國家豫算 즉, 國庫支出에 두지 않을 수 없다.

本計劃의 모든 項目은 國家에서 推進하는 것이므로 所定事業이 당연히 國家豫算에 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다만 圖書館 育成政策은 直接的으로 生産品의 增加나 富의 蓄積이나 또는 國民의 物量의인 惠澤을 주지 아니한다는데 政策立案者의 決定을 둔화시키기는 요인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미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 發展의 可能性은 한 國家가 포용하고 있는 創造的 知識에 있으며 創造的 知識의 開發 可能性은 전적으로 文獻情報에 있다, 따라서 圖書館 政策에 의한 國家의 利益은 發展과 번영에 직결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上述한 바와 같은 當爲性은 어느 國家에서나 이미 절실한 問題로 대두되어 있으나 그 問題性의 포착이 自覺的인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政策立案當局의 認識이 自發的으로 圖書館 政策을 立案할 만큼 情報에 대한 實際의 價値가 立證되지 않고 있다. 韓國

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어서 政策立案者와 自進하여 國庫에 依存한 圖書館 育成을 劃策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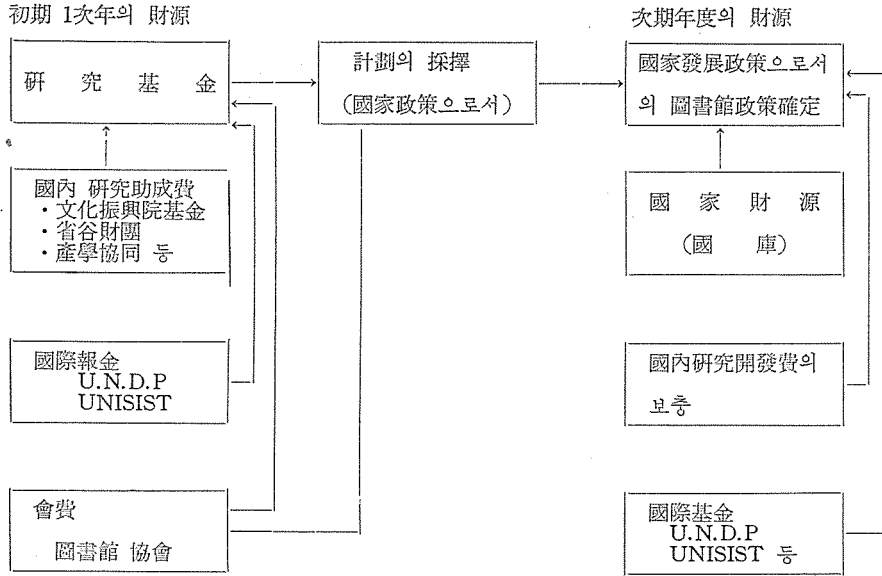
따라서 圖書館人은 이 時期의 到來를 促進시키기 위한 諸般計劃의 推進을 促求하여야 하며 6.1 年次計劃項에서 提示된 바 있는 第1次年度의 計劃은 最少限 圖書館界의 積極的인 活動에 의하여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에는 國庫 이외의 財源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안되므로 이에 대한 對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初期의 財政對策은 첫째로 研究基金의 確保이다. 이 基金은 韓國의 民間團體 및 半官 半民 團體와 政府에서 支援되고 있는 研究開發費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國際的으로 通用될 수 있는 各種 基金 즉 UNDP, UNESCO의 UNISIST 基金들을 活用 하도록 한다.

세번째 財源은 圖書館人 스스로가 財源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하여 長期計劃 推進基金을 會費 속에 包括하여 圖書館協會에서 支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2段階로서는 計劃의 採擇까지의 推進基金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本計劃을 立案하는데 있어서는 各種 研究課題로 보아 상당한 研究費가 支給되어야 하며 이 計劃案을 政府에서 採擇하도록 하는데도 상당한 基金을 要한다. 이 期間에 所要되는 基金은 전적으로 會員 즉, 圖書館人의 自發的인 財源 各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2段階까지 成就되어야 비로소 國家財源에 의한 圖書館 育成策이 施行段階에 이른다. 이 때에는 計劃의



2次年度가 될 것이다. 國家의 財源은 圖書館政策을 立案하고 施行하는 文化公報部가 豫算配定을 要求하므로서 그 始動이 될 것이며, 必要한 경우에는 圖書館稅와 같은 獨立稅源의 確保도 可能한 것이다.

NATIS計劃에 관한 國家豫算中 研究開發費의 5% 이

상이 文獻情報의 財源으로 支出될 것도 要求하고 있다.

國庫에 의한 財源의 確保가 있더라도 國內외의 研究開發基金의 活用도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圖書館發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負擔한 評價와 再分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再定立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 ● 80年度 會費引上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과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과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礎를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 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서 々々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解決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9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80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하였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團體會費 :	A 級	年	120,000원
	B 級		80,000원
	C 級		50,000원
	D 級		20,000원
	E 級		10,000원
個人會費 :		年	4,000원